

2020 세법개정안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소비활력 제고
- 성장동력 강화

포용 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



- 서민·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지원
-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 편의 제고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현행	개정
종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	현행 제도 통합·재설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대상 자산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 열거 (Positive 방식)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Negative 방식, 토지·건물·차량 일부 제외)
공제율	제도별 상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기본공제 +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1·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추가공제 : 증자분 투자액) 3%

이월공제 기간 대폭 확대

	현행	개정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원칙 5년	10년
결손금	10년	15년

02 소비활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년) 상향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적격증빙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인상

현행	개정
1만원	3만원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 2년 연장

03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현행	개정
증권거래세 인하	0.25%	0.25% → 0.23% ('21년) 0.23% → 0.15% ('23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3년)	이자·배당·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현행	개정
국내복귀 방식	국내 사업장 신설 필요	기존 국내사업장 증설도 가능
해외 생산량	50% 감축 의무	폐지
세제지원 대상 소득	국내복귀 소득	해외 감축량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 설정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현행	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원	연 매출액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업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연 매출액 3,000만원	연 매출액 4,800만원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X	발급 의무 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현행	개정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자산 운용범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계약 기간	5년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
납입한도 이월	허용 X	▶ 전년도 미납분 이월 허용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현행	개정
연 150만원	▶ 185만원 이하

· 지급기한 단축

현행	개정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02 |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 2년 연장,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1년 연장
-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1인당 공제세액 350~430만원)

세액 공제액	현행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700 ~ 770만원	450만원	-	-	▶ 1,100 ~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03 |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
5억원 이하		6 ~ 40%
5 ~ 10억원		▶ 42%
10억원 초과	42%	▶ (신설) 45%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완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일반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원 이하 (시가 8~12.2억원)	0.5%	▶ 0.6%	0.6%	▶ 1.2%
3~6억원	0.7%	▶ 0.8%	0.9%	▶ 1.6%
6~12억원	1.0%	▶ 1.2%	1.3%	▶ 2.2%
12~50억원	1.4%	▶ 1.6%	1.8%	▶ 3.6%
50~94억원	2.0%	▶ 2.2%	2.5%	▶ 5.0%
94억원 초과	2.7%	▶ 3.0%	3.2%	▶ 6.0%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거주기간 요건	현행	개정
	보유기간 연 8%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현행	개정	1~2년	현행	개정
	40%	70%		기본세율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현행	개정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3.6%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10→20%)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현행	개정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 니코틴 용액 1ml당 740원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상장법인 제외, 과점주주 범위 축소)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누락 과세표준 × 0.8 ~ 3.2%)

02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통지 항목도 추가·명확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현행	개정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無귀책시에만 발급	▶ 관세법상 벌칙사유, 고의적 부정행위 등을 제외하고 발급 허용

03 납세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 추가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제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